



제 418회 국회 (정 기 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ombudsman의 권한과 역할 및 책임 강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753호)

2024.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인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 목적규정 정비	2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 추가 규정	4
3.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기한 연장	6
4. 적극적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이행담보수단의 정비	9
5.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 강화	13
6. 의견 제출자 보호 및 적극행정자 징계감면 건의 규정 확대적용 등 ..	15
7.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18

※ 참고자료	19
1. 중소기업 ombudsman 기본현황 및 특징	19
2.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연혁	21
3. 중소기업 ombudsman 주요 통계현황	22
4. 적극행장 징계감면 및 기업민원 보호	23
5.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2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안연월일 : 2024. 7. 15.
3. 회부연월일 : 2024. 7.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ombudsman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ombudsman 설치 목적규정 정비

안 제22조제1항은 중소기업 ombudsman 설치 목적이 “기업 활력 제고”임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u>기준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u>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ombudsman을 둔다.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① - ----- <u>규제를 정비하</u> <u>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u> <u>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u> ----- -----.

중소기업 ombudsman은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제 및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는 독립기관(현행법 제22조제1항)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등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현행법 제22조제2항)하며,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현행법 제22조제3항)함.

현행법 제22조제1항은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목적을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로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의 궁극적 목표는 이 법(「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 조항에 비추어볼 때 중소기업 성장 지원,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¹⁾.

개정안은 이러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목적을 정비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정부(중소벤처기업부)도 중소기업 ombudsman 설치 목적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의 목표에 해당하는 “기업 활력의 제고”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 제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음²⁾.

이처럼 개정안은 현행법상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목적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는 않으나, 현행법상 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목적을 정비하여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법 해석상 오해³⁾를 유발할

1)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부안 입법취지(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중 발췌)

: 기업 활력 제고를 추가한 핵심적인 사유는 규제애로 개선의 목적을 규정하여, ombudsman의 다양한 활동(신설기능 포함)에 대한 입법취지를 명확히 법제화하고 제도 추진 방향을 정립하려는 취지

- ombudsman은 규제개선 전문기관이라는 역할 이외에도, 기업권익 대변이라는 ombudsman 제도 본연의 특징을 가지며 이를 위해 기업민원 보호·징계면책 건의·공표 등의 기능을 함께 수행
- 즉 이러한 기능을 포괄하면서 더 원활히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치목적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발의
- 아울러 규제과제가 아닌 ombudsman의 애로해소 건의가 업무기관에 단순 민원성 건의로 치부되지 않고 개선 추동력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입법효과가 있다고 예상

우려는 없는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용어인 “기업 활력의 제고”라는 문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2.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 추가 규정

안 제22조제2항은 중소기업 ombudsman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 규정을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추가로 규정하려는 업무로는 중소기업 ombudsman에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관계 업무기관의 불이익 또는 차별 현황의 점검 및 조사,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호조치(안 제3호 신설), 적극적인 직무집행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안 제4호 신설),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안 제5호 신설) 등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② ----- -----. 1. (현행과 같음)

3)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가 “기업 활력의 제고”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현행	개정안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신설> <신설> <신설> 3. 그 밖에 <u>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u>	2. (현행과 같음) 3. <u>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u> 4. <u>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u> 5. <u>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u> 6. ----- <u>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u>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즉, 개정안은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⁴⁾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4) 중소기업 옴부즈만제도는 2008년 12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주된 도입 목적은 규제 관련 중소기업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제약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불균형적인 물적·인적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시장에서의 경쟁과 혁신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다만, 안 제22조제2항제6호는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의 목표에 해당하는 “기업 활력의 제고”를 추가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안 제22조제1항 개정(중소기업 ombudsman 설치 목적 정비) 여부와 연계한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오히려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법 해석상 오해⁵⁾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⁶⁾.

3. 중소기업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기한 연장

개정안은 매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 기한을 매년 2월 말일까지로 1개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④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u>1월말까지</u>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④ ----- <u>2월 말일</u> -----.

중소기업 ombudsman은 법령에 따라 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개선 권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공표

5)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가 “기업 활력의 제고”에 해당되는 것만으로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6) 이와 함께 안 제22조제2항제5호는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로, 안 제22조제2항제6호는 “그 밖에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같은 조항 내의 각 호에서 목적에 해당하는 서술을 차별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바, 현행법은 이러한 중소기업 옴부즈만 법정 업무수행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규제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활동만으로 달성되지 않고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집행기관이 이행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완성되므로⁷⁾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가 적기에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보고될 필요가 있음.

개정안(정부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보고받는 기관의 위상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보고서를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의 순서로 순차 보고하고 있는데, 회의체 기관(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의 회의 개최주기 및 일정, 논의 안건 수 등으로 인해 보고가 수월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측면⁸⁾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년 1월말까지 보고를 완료하기 쉽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7)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년 9월 15일자), 중소기업 옴부즈만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폐업 신고기한 7일→30일 확대”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애로를 신고한 민원인들은 폐업 이후 신고기한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폐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하였고,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의 요구를 받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문체부는 음악분야 사업자 등에 대한 폐업신고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고 함. 이와 관련하여 폐업 신고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개정이 필요함.

8) 규제개혁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민관합동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및 대통령위촉 1인))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회의가 개최되며, 차관·국무회의 등은 매주 개최가 원칙이나 내부보고 및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임.

활동 결과보고서 보고기한에 관한 입법례들을 살펴보면, 법령에서 별도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입법례⁹⁾¹⁰⁾¹¹⁾부터 보고서 보고(또는 제출) 기한을 2개월 이상으로 설정한 입법례¹²⁾¹³⁾¹⁴⁾까지 다양한 유형의 입법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의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집행기관이 이행하고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개혁위원회, 국무회의, 국회에 각각 신속하게 보고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중소기업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하여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 유사입법례 및 국회에 대한 신속 보고 필요성¹⁵⁾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9)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가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2조(보고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을 조사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2회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지방재정법」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ombudsman 등) ⑦ 외국인투자ombudsman은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제도의 현황과 그 개선실적 등 정비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의3(외국인투자ombudsman의 기능 등) ⑦ 외국인투자ombudsman은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중소기업 ombudsman 활동 결과보고서는 고유한 법정사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4. 적극적 규제 개선 등을 위한 이행담보수단의 정비

개정안은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의 적극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이 업무기관의 장에게 업무처리와 관련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2조제6항),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 권고를 따르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u><신설></u>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u>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u>	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6항에 따른	⑦ ----- 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 및 제2호----- -----, -----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 해당 권고----- -----.
⑦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6항에 따른	⑧ ----- 제7항-----

현행	개정안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 ----- -----.

현행법은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ombudsman이 활용할 수 있는 이행담보수단으로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 권고(법 제22조제6항, 이하 “개선 권고”라고 한다)¹⁶⁾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¹⁷⁾에서는 이러한 개선 권고에 추가로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개선 건의(이하 “개선 건의”라고 한다)를 규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선 건의는 개선 권고보다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이행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ombudsman의

16)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⑥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4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직무 등) ① 중소기업 ombudsman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1. 불합리한 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고충처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기관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개선 건의 및 권고
3.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의 조사·분석
4.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완화와 애로사항 해결에 대한 평가 및 분석
5.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와 애로사항 해결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및 보고
6. 중소기업 관련 규제와 애로사항에 관한 법규·제도 및 고충처리 사례의 조사·연구
7. 그 밖에 중소기업 관련 규제의 개선과 애로사항 해결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우 개선 권고(연간 0건~6건에 불과)보다는 주로 개선 건의(검토과제 중 50% 가량 개선 건의)를 통해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 건의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기관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개선 권고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2014년 이후 2023년말까지 총 18건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졌으나,¹⁸⁾¹⁹⁾ 이 중 업무기관에서 권고를 수용한 과제가 11건(수용률 61.1%)에 불과하는 등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표 1] 주요 권고과제 예시

권고일시	업무기관	권고내용	기관의견
'19.12.31.	식약처	○ 매출액 5천만원 이하 구간의 과징금 하향 조정 등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 (불수용) 국민보건 위생 위해 방지에 필요한 행정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과징금 체계 유지 필요
'21.12.29.	환경부	○ 숲속 야영장 조성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 면적 산정기준을 전체 면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개발한 면적으로 한정	○ (수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0호 개정완료 ('23.3.31)
'23.4.7.	인천시 충남도 등	○ 비도시지역 편도 1차로에 입지하는 소규모 생산시설의 입지부담 완화를 위하여 변속차로 설치대상 기준 및 최소길이 확보 규제 완화 * (기존) 주차대수 20대 이하(최소) → (개선) 5대 이하 항목 신설	○ (수용) 인천시, 강원도, 충북도, 전남도, 경북도, 경남도, 제주도 * 향후 각 지자체별 조례개정 추진 ○ (불수용) 충남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8) 개선권고(건): ('17) 1 → ('18) 6 → ('19) 6 → ('20) 0 → ('21) 3 → ('22) 1 → ('23) 1
과제처리(건): ('17) 3,383 → ('19) 5,328 → ('21) 4,987 → ('22) 3,230 → ('23) 3,633

19)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개선건의 → 대면협의 → 개선권고 → 이행점검 → 공표의 순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함.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ombuds만이 업무기관에 개선 건의를 포함한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기관은 중소기업 ombuds만의 의견을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시(안 제6항)하고 있음. 아울러 중소기업 ombuds만의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7항).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들은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적 이행담보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유사입법 제20)에 비추어볼 때 도입가능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안 제22조제7항 후단은 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이 보다 일반적인 입법례이고 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법은 현행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이하 “개선권고”라고 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2조제7항 전

2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은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항 제3호(안 제6호) 관련 개선권고를 제외하였는바,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는 개선권고의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5. 중소기업 ombudsman의 책임성 강화

개정안은 중소기업 ombudsman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안 제22조제9항 신설)와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안 제22조제10항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ombudsman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u><신설></u> <u><신설></u>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u>⑨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⑩ 중소기업 ombudsman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u>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유사입법례²¹⁾²²⁾²³⁾를 참고하여

2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5조의2(외국인투자ombudsman 등)

⑧ 외국인투자ombudsman은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외국인투자ombudsman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중소기업 ombudsman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공정한 업무 수행 및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중소기업 ombudsman의 경우 현행법상 준용규정에 따라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되어²⁴⁾²⁵⁾ 법 개정 없이도 이미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²⁶⁾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 제24조제1항²⁷⁾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현행법 제22조제8항²⁸⁾에 따른 사무기구 종사자 중 공무원이

22) 「지식재산 기본법」

제39조(비밀 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기구의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파견·위촉·위탁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사무기구의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3) 「감사원법」

제10조(정치운동의 금지)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24)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⑤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ombudsman"으로 본다.

25) 「행정규제기본법」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6)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7) 「중소기업기본법」

제24조(행정지원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ombudsman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8)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ombudsman의 설치) ⑧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6. 의견 제출자 보호 및 적극행정자 징계감면 건의 규정 확대적용 등

개정안은 의견 제출자 보호 대상기관을 행정기관에서 업무기관으로 확대하고 의견 제출자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ombudsman의 의견제시권을 신설하며,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하여도 적극행정자 징계감면 건의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 -----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 -----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업무기관----- ----- ----- -----.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	③ ----- -----

현행	개정안
였다는 이유로 관계 <u>행정기관</u>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u>경우에는</u>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적극적인 <u>규제개선</u>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u>담당공무원</u>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u>업무기관</u>----- ----- ----- <u>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u> -----. ④ ----- <u>규제개선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u>----- ----- <u>담당공무원 및 임직원</u> ----- ----- -----.

당초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이 2013년 법 개정(법 제22조제2항제2호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으로 확대되었으나, 의견 제출자 보호를 위한 규정에는 이러한 대상기관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특히, 현행법은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차별 금지원칙 규정(제23조제2항), 권익위 고충민원 대리신청(제23조제3항)의 대상기관으로 관계 행정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이 가하는 불이익이나 차별에 의견 제출자가 무분별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개정을 통해 의견 제출자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의견 제출자 보호를 위해 권익위 고충민원 대리신청

청에 추가로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 대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제시권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현행법상 규제개선 행정에 국한된 적극행정자 징계감면 규정을 애로사항 해결 관련 행정으로 확대하고, 그 대상에 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들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필요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한편, 안 제23조제1항은 안 제22조제2항 개정과 연계하여 인용규정을 개선하고 「행정절차법」 제44조 준용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법」 제44조 준용 규정 삭제 부분의 경우 또다른 준용규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개정(2018년 4월)사항을 반영하여 더 이상 준용할 필요가 없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²⁹⁾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23조제1항은 현행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현행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만을 규정함으로써 같은 항 제3호(안 제6호) 관련 의견제출을 제외하였는바, 현행법상 허용되어 있는 의견제출의 범위를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29) 즉,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의견 제출 방법 및 처리절차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시부터 현행과 같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처리절차 규정이 없어 행정절차법에 따라 통지의무를 준용토록 입안하였으나, 2018년 행정규제기본법 관련규정 전면개정으로 통지의무가 신설되어 입법안의 의견제출 및 처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을 추가적으로 준용할 실익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함. 이에 준용법률 간 상충을 미연에 방지하고 중소기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안 제24조제3항은 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업무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업무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4조(행정지원 등) ①·② (생략) <신설>	제24조(행정지원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ombudsman은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 업무기관은 정부포상(단체표창³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안과 같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둘 필요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입법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³¹⁾.

문의처
02) 6788-5463

30) 당해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단체에 수여.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수여(단체에 대하여는 훈장이나 포장을 수여하지 않음)

31)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에 따른 소요예산을 연간 9천만원이 예상함(법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참고자료 5) 참조).

【참고자료 1】 중소기업 ombudsman 기본현황 및 특징(중기부 제출)

1. 설치기능 및 활동보고

❶ (설치기능) 중기 ombudsman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개선과 애로해소,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업민원인 보호를 독립 수행토록 규정하며 대상기관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기관임.

- 외투 ombudsman, 산업융합 ombudsman 등은 법률에 기반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담당 분야가 한정되며 설치목적·기능 등도 애로사항 처리*에 걸쳐 기능범위, 독립여부, 대상기관** 면에서 큰 차이

* (외국인투자법-ombudsman) 외국인투자가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 (산업융합촉진법-ombudsman)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애로와 건의사항 접수·조사 및 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 중기 ombudsman은 일부 민간기관에 대하여도 규제개선·애로해소 필요성을 고려 대상기관으로 입법화하고 있으나 타 ombudsman은 명시적인 규정·권한 부재

- 특히 적극행정 면책건의 기능의 경우, 징계권자의 고유권한에 대해 제3의 기관이 법률에 기반하여 유일하게 징계감경·면제를 건의토록 규정('13년)하고 있으며, 운영규정(대통령령)으로 뒷받침*

* 징계의결 요구서 등을 혐의자에게 송부할 경우 중기 ombudsman 징계면책 건의제 안내 의무화 :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인사처)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행안부)

❷ (활동보고) 중기 ombudsman은 업무의 책임·권한을 담보코자 법률에 의거 매년 규개위·국무회의·국회에 활동사항을 보고토록 규정

- 반면 타 ombudsman은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에 제출*(외투 ombudsman)하거나 산업부장관에 분기 보고(산업융합 ombudsman)토록 활동보고를 규정하여 차이점이 상당

*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의거 '제출'로 규정

- 즉 중기 ombudsman의 책임·위상은 여타 ombudsman과 비교할 바가 아니며, 행정위원회 등과의 비교시에도 크게 뒤처지지 않음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매년 규제정비종합계획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보고와 규제개선 점검·평가시 평가결과를 국무회의·대통령 보고토록 하고 있으나 국회보고는 없음

2. 선임자격 및 지원체계

- ❶ (선임자격) 중기 읍부즈만은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 추천, 규개위 심의, 총리 위촉으로 엄격히 선임(임기 3년)하고, 자격요건(대통령령)으로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자체장을 포함*하여 매우 높게 규정

* 규개위의 경우 1급 이상 공무원 등으로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

- 또한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규제혁신전략회의(VIP 주제) 및 정부 내 주요 의결회의체 참석이 적지 않으며 통상 차관급*으로 예우

* 자격요건 중 중앙행정기관장, 광역지자체장이 최소 차관급으로 이에 맞춰 판단

- 외투 읍부즈만은 산업부장관 제청, 외국인투자위 심의, 대통령 위촉으로 중기 읍부즈만 보다 위상이 높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제도 도입시의 중기청·산업부의 위상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

- 산업융합 읍부즈만은 산업부장관이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하며 외투 읍부즈만과 함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만 자격요건을 규정(임기규정 없음)하여 중기 읍부즈만과의 유의미한 차이

- 아울러 중기 읍부즈만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주요 규제개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시한다는 점도 고려

* (위원장) 국무총리, (정부위원)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림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장관, (심의·운영) 특구 지정, 기본방향 등

- ❷ (지원체계) 읍부즈만 활동을 법률에 기반하여, 정부부처가 직접 사무기구를 두어 뒷받침하는 경우는 중기 읍부즈만이 유일하며 읍부즈만지원단은 고공단급 조직으로 읍부즈만 활동만을 지원

* 사무기구 법적근거 마련('13년) 및 고공단급 조직 격상('19년) 관련법령 개정과정에서도 전례가 없어 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중소기업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중기 읍부즈만의 그간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인 관점에서 반영

- 외투 읍부즈만은 코트라에 고충처리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융합 읍부즈만은 설치근거 없이 생기연이 활동을 지원

-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국조실(규제조정실)이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수행하나 위원회 지원만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하기에 전담지원조직을 두고 있는 중기 읍부즈만 제도와도 차이점이 상당

【참고자료 2】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연혁(중기부 제출)

1. 제도로입 및 기틀마련

- ❶ ('08년) '중소기업 제도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ombudsman 제도 국내 도입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의결('08.8)
* 미국 중소기업ombudsman(SBA, Office of the National Ombudsman) 제도('97~) 벤치마킹
- ❷ ('09년) 중기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설치근거 법제화 및 중소기업 ombudsman* 위촉 및 ombudsman실 개소('09.7)
* (법정업무) 중소기업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에 따른 고충처리, (법정권한) 건의
- ❸ ('11년) 중기기업기본법 개정으로 기업민원인 보호정책 업무* 추가
* 기업민원인이 불이익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기업인을 대리하여 ombudsman이 진정제기

2. 제도 고도화 · 내실화

- ❶ ('13년)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 ombudsman의 업무범위, 기능 · 권한, 대상기관 등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기구 법제화·출범**
* ① (업무범위) 기존규제 정비 및 규제 민원처리 → 기존규제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
② (기능·권한) 규제개선 건의 → 건의, 권고, 이행점검, 공표, 적극행정 면책건의 등,
③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영기관,
④ (활동보고) 규제위, 중기청 → 국회, 국무회의, 규제위
** 중기청 직제령 개정을 통해 중기청 차장직속 ombudsman지원단 구성(과장급)
- ❷ ('14년) 중견기업법 개정을 통해 중견기업 규제애로 개선업무를 중소기업 ombudsman이 담당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 243곳 설치*
*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규제애로 신고창구)를 지자체와 협업·운영
- ❸ ('18년) 지역특구법 전면개정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중소기업 ombudsman이 선임·활동
- ❹ ('19년) 적극행정 관련 시행령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 ombudsman의 적극행정 면책건의 제도 안내 의무화 및 지원기구 강화*
* ombudsman지원단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개편(중기부 직제령 개정)
- ❺ ('20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중심으로 125개 '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애로 신고 전담창구, '23.10월 예정기관 포함 162개)' 구축·협업운영
- ❻ ('22년) 개선권고 시 이행계획(미이행시 그 사유) 제출토록 회신기한 설정(30일 내) 및 공표 의무화로 권고 실효성 제고(중기기업기본법 시행, 7.5.)

【참고자료 3】 중소기업 음부즈만 주요 통계현황(중기부 제출)

1. 연도별 기업소통 세부현황

구분		누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계	횟수	1,292	12	35	68	84	77	102	88	75	58	146	76	157	155	92	67
	참여	10,688	121	229	486	752	651	832	499	541	424	684	1,306	1,224	1,282	997	660
간담회 소계	횟수	667	12	35	37	39	39	75	52	53	44	60	60	54	34	39	34
	참여	8,558	121	229	393	617	537	751	389	475	382	471	1,241	782	834	825	511
지역 간담회	횟수	395	5	12	24	18	26	59	11	34	34	37	50	17	19	21	28
	참여	5,288	78	113	281	227	333	588	97	281	294	270	1,057	304	462	474	429
분야 간담회	횟수	272	7	23	13	21	13	16	41	19	10	23	10	37	15	18	6
	참여	3,270	43	116	112	390	204	163	292	194	88	201	184	478	372	351	82
기업 방문	횟수	625	0	0	31	45	38	27	36	22	14	86	16	103	121	53	33
	참여	2,130	0	0	93	135	114	81	110	66	42	213	65	442	448	172	149

2. 규제애로 발굴·처리 세부현황

구분	발굴					처리(종결)							
	총계	현장 소통	기업 건의	협력 발굴	신고 센터	총계	안내 시정	정책 건의	수용	일부 수용	장기 검토	수용 불가	이첩 철회
'09년	451	110	234	107	-	259	198	0	2	2	29	23	5
'10년	1,213	376	449	388	-	1,112	824	0	40	42	73	107	26
'11년	962	508	164	290	-	1,062	788	30	48	41	115	38	2
'12년	1,005	430	311	264	-	895	427	37	166	110	96	51	8
'13년	1,085	217	507	361	-	1,027	434	11	183	74	158	153	14
'14년	3,418	105	1383	525	1405	3,446	1,180	34	389	244	463	1,065	71
'15년	2,016	234	886	137	759	2,054	789	2	356	143	309	425	30
'16년	3,001	276	972	185	1568	2,593	1,136	4	381	172	249	609	42
'17년	4,970	280	953	159	3578	3,383	1,772	14	460	182	366	562	27
'18년	4,486	569	1090	370	2457	3,982	1,896	52	236	194	425	1,153	26
'19년	3,225	424	543	503	1755	5,328	2,665	108	447	328	375	1,341	64
'20년	5,848	721	2416	1104	1607	5,469	1,271	321	1,781	322	419	1,302	53
'21년	4,868	269	1029	399	3171	4,987	1,329	106	2,047	480	481	496	48
'22년	2,661	233	514	697	1217	3,230	815	155	595	505	237	685	238
'23년	3,648	241	980	984	1,443	3,633	829	35	987	252	752	546	232
누계	42,857	4,993	12,431	6,473	18,960	42,460	16,353	909	8,118	3,091	4,547	8,556	886
비율	100.0	11.7	29.0	15.1	44.2	100.0	38.5	2.1	19.1	7.3	10.7	20.2	2.1

【참고자료 4】 적극행정 징계감면 및 기업민원 보호(중기부 제출)

□ 적극행정 징계감면 건의제도

- (배경) 규제완화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문제와 이로 인한 감사 부담으로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무사안일 행태가 상존
- (개요) 적극적인 규제개선 직무 중 위법행위 등으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옴부즈만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 면제·감경 건의*
 - *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제4항,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 ** 절차: 사례발굴 → 요건검토 → 현장점검, 관계자 인터뷰협의 → 감경건의 → 징계위 대응
- (성과) 적극적인 징계면책 건의, 징계위원회 심의대응 등을 통해 3개 지자체 3건(7명)에 징계 감경 실시

구분	내용(징계요구 경위)	징계요구	처리결과
OO시('17년)	◆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4m)하여 공장신설을 승인 → 충분한 검토없이 처리, 성실의무 위반	담당 경징계	불문
OO시('18년)	◆ 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 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 → 형식적 검토처리, 성실의무 위반	과장·팀장 중징계 담당 경징계	감봉1월, 견책, 불문
OO시('19년)	◆ 세탁공장을 조건부 계약형태로 산단입주 처리 업무 추진 → 자격이 없는 자와 입주계약으로 성실의무 위반	과장·팀장·담당 경징계	불문

* (참고) 징계유형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

- (배경)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을 우려하여 규제애로 건의를 포기
 - * A기업인은 회사 경영을 그만둘 때까지는 기업민원 피해신고를 할 수 없다고 토로
- (개요) 기업 민원인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 금지 등*을 선언토록 보호헌장(안)을 마련·권고하는 등 기업민원 보호정책 추진
 - * 예: 소극적 업무처리, 보다 엄격한 규제·준수기준 시행, 허가 및 인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불합리한 세무조사 등
- (성과) 정부부처 23개, 지자체 243개, 공공기관 137개(예정 포함) 등 총 403개 각급 행정·공공기관 보호헌장 제정 추진

【참고자료 5】 법안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정부 제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24조제3항 (행정지원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제3항 (행정지원 등)	제1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

2. 상세 사유

- 연평균 약 90백만원 소요 예상 : (6개 기관×10백만원) + (6개 기관× 5백만원)
 - 평가대상 기관 수(잠정) : 총 431개 기관
 - 중소기업 유관성 높은 중앙행정기관 26개,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주요 공공기관 162개(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75개)
 - 포상금이 지급되는 기관 수 및 지급액
 - 평가대상 기관을 6개 유형으로 구분, 각 유형별로 최우수(1) 및 우수(1)기관 선정
 - 최우수 기관에는 기관 당 10백만원, 우수 기관에는 기관 당 5백만원 포상금 지급

III. 부대의견

-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마련할 예정이고, 포상금의 규모는 특성상 명확히 비용을 추계하기가 곤란하며, 추후 포상금 지급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
- ※참고사항
 - 동 법률안 제22조제2항제5호의 ‘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관련 현행 예산에서 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